

- 이 추록은 『2025 세법워크북』 제19판 1쇄, 2쇄 및 3쇄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.
- 이 추록은 출간 이후 개정된 세법 내용, 행정해석 및 그 밖의 보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

## 1. 추가 개정 법령 반영 사항

면	행	종전의 내용	고칠 내용
소득-40	상 3	모집된 것일 것	모집 또는 매출된 것일 것
소득-112	각주 21 상 2	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	취득(연금주택을 양도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이하 같음)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
소득-200	하 2	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	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
부가-159	상 12	(-) 예 정 고 지 세 액 (-)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	(-) 예 정 고 지 세 액 <b>(-) 수 시 부 과 세 액</b> (-)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
부가-215	상 15	(-) 예정부과(신고)세액	(-) 예정부과(신고)세액
		(+) 가산세 <sup>㉞</sup>	<b>(-) 수시부과세액</b>
			(+) 가산세 <sup>㉞</sup>

### ◆ p. 법인-312 하 3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해 주세요.

- ③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중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 :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
- ④ ①~③ 외의 사업용자산 : 2년

### ◆ p. 법인-436 하 13~14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해 주세요.

-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  - ㉞ 혁신금융사업자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것일 것
  - ㉞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가 하나의 자산을 신탁받아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된 것일 것

▣ p. 소득-39 하 3~4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해 주세요.

-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  - ㉠ 혁신금융사업자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것일 것
  - 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자가 하나의 자산을 신탁받아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된 것일 것

## 2. 그 밖의 수정 및 보완사항

면	행	종전의 내용	고칠 내용
법인-299	상 2	다음의 <u>해당</u> 세액으로서	다음의 세액으로서
법인-381	하 2	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	합병등기일 전 2년 <u>이내</u> 에
소득-279 <sup>1)</sup>	상 11~12	- 취득가액 : A의 취득시 취득가액 - 자본적지출액 : A가 지출한 금액 + B가 지출한 금액	-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 : A가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 계산
소득-320	각주 8 상 1	15년 <u>이내</u> 에 끝나는	15년 <u>이내</u> (2021.1.1.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)에 끝나는

1) [수정이유] 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(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)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. 이 경우 수증자가 지출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조문이나 판례·예규상으로는 그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,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자에서는 “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증여자가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”고 표현하고 있습니다(국세청 자산과세국, 2024 양도소득세 실무해설, p.181). 국세청 책자의 표현으로 보면 증여일 이전의 필요경비뿐만 아니라 증여일 이후의 필요경비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됨은 파악할 수 있으나, 수증자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.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증여 후 양도 행위를 가장행위로 보아 이를 부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이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, 수증자가 지출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실질적으로 증여자가 지출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저자의 사견일 뿐이므로 국세청 책자의 표현대로만 교재의 내용을 표현하기로 하였습니다.